

‘아재’를 기억하는 이유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입양인 신승희 씨의 판결을 하루 앞둔, 법률신문 2023년 5월15일자 5면

‘아재’를 처음 본 것은 차가운 자동차 유리 너머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친척한 분이 오신다고 했다. 그분이 누군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저 먼 친척이라고만 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한국에 온 거라고. 먼 친척을 보통 ‘아재’라고 불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문 너머 누군가 걸어왔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셨다. 8살 앓은기로 창문 밖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반가움과 그리움, 아련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분명 이 감정은 커가면서 덧입혀진 상상의 감정일 것이다.

‘아재’가 같이 차를 타고 갔는지 그 자리에서 헤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더 이상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자연스레 ‘아재’의 존재는 기억 속에서 사라

져갔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모여 분명 ‘아재’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살아가다 보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다.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억 속 장면과 파편의 말들이 모여 퍼즐 맞추듯 기억의 공백을 메워준다.

먼 친척 집에서 태어난 ‘아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그런 시절이었다. 모두가 다 힘들었던, 그래도 더 힘든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아재’는 청년이 되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양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시민의 일원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뿌리를 향한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



2023년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송혁 씨 불법입양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김소정 변호사(연합뉴스 캡처)

았다. 어느 순간에는 일상마저 뒤흔들었다. ‘아재’는 그 열망으로 한국까지 왔다. 하지만 부모는 만날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해 먼 친척을 찾아왔다.

16만9454명. 한국전쟁 직후부터 최근까지 해외로 입양을 보내진 아동의 수다. 비공식적으로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중에는 불행히도 ‘아재’와 같이 정식으로 입양 국가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아담 크랩서 씨가 그랬다.

아담 크랩서, 한국명 신송혁 씨의 생모

는 1978년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한 시설에 신 씨와 그의 누이를 맡겼다. 그 시설은 신 씨의 어머니에게 미국 입양을 권유했고 그곳 원장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신 씨는 본인이 양육하는 무적아(無籍兒)로서 아동의 장래를 위해 귀회의 알선으로 입양 이민하는 것을 승낙하며 상기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입양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해외입양이민 승낙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 후 홀트는 구청에 신 씨에 대한 기아발견 보고를 하고 구청은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다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 씨의 호적을 만들었다.

당시 홀트 회장은 미국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견인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후견인진술서

“본인은 본 아동이 적당한 양부에게 입양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 이민함에 있어서 하등의 이의 없이 동의함. 또한 본 아동의 의료 및 외과적 치료에 대한 동의 권한뿐 아니라 본 아동을 입양 가정에 안주시킬 수 있는 권리 및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 권한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미국 미시간주 사회사업

부에 양도함. 본인은 본 아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부여된 모든 권리를 미국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 인계하므로 본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하등의 이의 없이 포기할 것으로 양지함.”

신 씨는 1979년 IR-4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당시 미국의 국제입양 비자는 IR-3, IR-4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IR-3 비자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완료돼 미국 입국 전 아동과 양부모 사이에 이미 가족관계가 성립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였다. 반면 IR-4 비자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채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서 입양재판을 마친 후 가족관계가 성립될 예정인 경우 발급되는 비자였다.



입양 권리 부실 책임을 물어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해외 입양인 신성혁 씨(MBC 캡처)

신 씨는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당시 입양법은 소위 ‘대리입양’ 방식의 국외 입양을 허용하고 있었다.

‘대리입양’ 제도란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국외에서 대리인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아동을 직접 보지 않아도 국외에서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리입양 제도는 “입양 부모가 사는 집 문 앞까지 아이를 ‘배달’ 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2011년 폐지됐다.

거칠게 말해 ‘고아로 꾸며져’ 미국으로 ‘배달’ 된 신 씨는 양부모의 학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했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이들이 그렇듯 신 씨도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됐다. 그제야 신 씨는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 입양 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는 만료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홀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

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한국 정부도 포함됐다. 위험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소송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을 문제 삼아 입양알선기관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자연스레 매스컴도 떠들썩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슈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며 신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잠잠해졌다. 2022년 12월20일로 잡혔던 선고기일은 한 차례 연기됐다. 새해가 밝아왔고 5월16일로 다시 잡힌 선고기일은 조용히 다가왔다. 마침 5월11일인 ‘입양의 날’ 며칠 후였다. 선고 전날인 15일 조용히 <불법 해외입양> 첫 국가 책임 인정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잊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다.

“37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원고의 삶은 환대의 시간이 아닌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자식들과의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일의 피해자는 누구의 선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 씨는 비명을 지르는 심정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대한민국에서 법원조차 믿지 못해 진술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법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연합뉴스 캡처)

으로부터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해외 입양인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랍니다.”

변호인단은 당사자만큼이나 절실했지만 재판부는 홀트의 보호의무 위반, 국적취득 확인의무 위반만을 인정했고, 국가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을 뿐 신 씨와 같은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인은 “절반의 승리”라고 아쉬워했다.

과연 불법 해외 입양인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 다행히 최근에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제 56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Ⅱ)’ 237건을 포함한 288건에 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34건에 이은 2번째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개시 결정이다.

신청인은 영유아·아동이었던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으로 입양된 사람



신성혁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의 피터 뮐러 공동대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외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최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연합뉴스 캡처)

들이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신 씨와 유사한 사연을 지녔다.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지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과 친생 가족에 관한 정보가 변동·유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는 시설이나 양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도 주장한다.

그간 해외 입양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져왔다. 한편에서는 해외 입양을 ‘악’으로 규정한 이들의 주장을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해외 입양은 곧 아동 수출’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입양은 점점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 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으나 지난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142명이다. 조만간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 적으로까지 몰렸던 입양기관도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입양 관련 업무를 국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입양 3법이라 불리는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국제입양법’ 3개 법안이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2025년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비준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2013년 협약에 서명한 지 12년 만이다. 헤이그 아동협약은 입양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다 잘된 일일까?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과거는 단단히 딛고 서 있어야 할 개인의 심리적 토대를 뒤흔든다. 그렇게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퍼즐을 맞추려 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찾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아픔을 가진 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인지언정 타인의 아픔을 보며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아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저 ‘잘 지내겠지. 나이가 많이 들었겠다.’ 정도의 말만 들릴 뿐 더 이상 들려오는 소식은 없다. 앞으로 신 씨를 비롯한 과거 해

외 입양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해 보지만 각종 부처 간, 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선뜻 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법원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이다.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